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
----------	----

제출년월일 : 1998. 9.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법령에 일부 조항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안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안 제4조)
-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함(안 제5조)
-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조문 신설(안 제7조 내지 제9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의안전문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50~70범위에서 재정 형편에 따라 조정)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리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